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989. 03. 01.	개정 2008. 09. 01.	개정 2018. 01. 31.
개정 1993. 06. 02.	개정 2009. 06. 01.	개정 2019. 02. 13.
개정 2005. 09. 01.	개정 2012. 07. 30.	개정 2020. 10. 22.
개정 2006. 09. 01.	개정 2013. 03. 15.	개정 2022. 07. 08.
개정 2007. 03. 01.	개정 2013. 09. 30.	개정 2023. 05. 16.
개정 2007. 09. 01.	개정 2016. 11. 14.	
개정 2008. 03. 01.	개정 2018. 01. 1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내·외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담당부서) 장학금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는 학생처 학생서비스팀(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이 된다. <신설 2018. 1. 19.><개정 2018. 1. 31, 2019. 2. 13.>

제2조(장학금 예산) ① 본 대학 장학금 예산은 장학금 세부항목별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참고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개정 2016. 11. 4.>

② 장학금 예산편성은 교비예산의 10% 이상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3. 3. 15.>

③ <삭제 2016. 11. 4.>

④ <삭제 2016. 11. 4.>

⑤ 산업체위탁생과 전공심화 재학생, 성인학습자전담과정 학생의 장학금 예산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4, 2022. 7. 8.>

1. <삭제 2016. 11. 4.>
2. <삭제 2016. 11. 4.>
3. 산업체특별장학금 - 산업체위탁생 모집인원을 반영한 수업료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장학금 예산으로 편성 <개정 2009. 6. 1, 2012. 7. 30, 2013. 3. 15, 2016. 11. 4.>
4. 전공심화장학금 - 전공심화 모집인원을 반영한 수업료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장학금 예산으로 편성 <개정 2013. 3. 15, 2016. 11. 4.>
5. <삭제 2016. 11. 4.>
6. <삭제 2016. 11. 4.>
7. <개정 2013. 3. 15.><삭제 2016. 11. 4.>
8. <삭제 2016. 11. 4.>
9. <삭제 2016. 11. 4.>
10. 성인학습자전담과정장학금 - 성인학습자전담과정 모집인원을 반영한 수업료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장학금 예산으로 편성.<신설 2022. 7. 8.>

제3조(장학생 인원배정 등)<개정 2019. 2. 13.> ① 성적장학생 인원 및 예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4, 2019. 2. 13.>

1. 고등교육통계 4월 1일자, 10월 1일자 재학생 인원을 기준으로 차년도 성적장학금 예산을 배정한다. <개정 2013. 3. 15, 2016. 11. 4, 2019. 2. 13.>

2. 신입생은 정원 내 전형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차년도 정원내 신입생의 입학 성적장학금 예산을 배정한다. 단, 당해연도 정원외 전형의 등록인원이 10명 이상이고, 차년도 정원외 전형의 입학정원이 10명 이상인 학과에 대하여는 정원외 신입생의 입학 성적장학금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3. 학과별, 학년별, 주야를 구분하되, 학년별로 배정된 장학금총액에 대하여는 학과별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액을 배정한다. <개정 2006. 9. 1, 2016. 11. 4.>
4. 성적우수장학금 선발인원은 신입생의 경우 전체수석 1명, 과수석 1명과 성적우수 약간명을 선발하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과수석 1명과 성적우수자 약간명을 선발한다.
<개정 2013. 3. 15, 2016. 11. 4, 2022. 7. 8.>
5. 성적우수자의 경우에는 배정된 장학금액에서 학과별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3. 1, 2013. 3. 15, 2016. 11. 4.>
6. <삭제 2013. 3. 15.>
7. 최초합격자(정원내 전형)의 경우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7. 8.>
② 드리미장학생 인원배정 기준은 담당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11. 4, 2019. 2. 13.>
1. <삭제 2019. 2. 13.>
2. <삭제 2019. 2. 13.>
3. <삭제 2019. 2. 13.>
③ 산업체특별장학생, 전공심화장학생, 성인학습자전담과정장학생 인원은 재학생, 복학생 전원(단, 미등록휴학생, 국가유공자 제외)으로 배정한다. <개정 2013. 3. 15, 2018. 1. 19, 2022. 7. 8.>
④ 공로 장학생 인원배정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해당학기 모집인원 및 담당부서 예산에 따라 기준 및 인원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2020. 10. 22.>
1. 총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국장 4명, 차장 4명
2. 동아리연합회 - 동연회장 1인, 동연부회장 1인
3. 미디어센터 - 방송국장 1인, 편집국장 1인, 정기자 4명, 수습기자 4명) <개정 2018. 1. 19, 2020. 10. 22.>
4 <삭제 2020. 10. 22.>
5. 과학생회장 - 각 학과별 1인 단, 주야간을 통합하여 1명에 한하여 배정 <개정 2018. 1. 19.>
6. 각과 반대표 - 각 학과별 주야 구분하여 40명당(반별) 반별 1인. 단, 산업체위탁반, 전공심화반, 성인학습자전담과정반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배정
<개정 2016. 11. 4, 2019. 2. 13, 2022. 7. 8.>
⑤ 기타장학생 인원배정은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한다. <개정 2013. 3. 15, 2016. 11. 4.>
⑥ 특별장학생(S-HRD특별장학생 포함) 인원배정은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한다.
<개정 2012. 7. 30, 2016. 11. 4.>
⑦ 교외장학생은 담당부서에서 선발인원을 배정하며, 기타 외부지명인 경우에는 해당학과에 배정한다. <개정 2016. 11. 4, 2022. 7. 8.>
1. <삭제 2016. 11. 4.>
2. <삭제 2016. 11. 4.>
3. <삭제 2016. 11. 4.>

제4조(장학금 신청)<개정 2018. 1. 19.> ① 본 대학 교내장학금 종류 및 수혜자격은 별표 1과 같으며, 사회봉사, 특별 및 기타, 교내근로(드리미)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3호 서식 중 정해진 양식과 추천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09. 6. 1, 2012. 7. 30, 2013. 3. 15, 2016. 11. 4, 2018. 1. 19, 2020. 10. 22.>

② 각 장학금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4.>

1. 성적, 산업체특별, 전공심화, 성인학습자전담과정장학금은 담당부서가 일괄 선발하며, 별도의 장학금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15, 2016. 11. 4, 2018. 1. 19, 2020. 10. 22, 2022. 7. 8.>
2. 교내근로(드리미)장학금, 특별·기타장학금, 공로장학금의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안내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개정 2012. 7. 30, 2013. 3. 15, 2016. 11. 4, 2018. 1. 19, 2018. 1. 31, 2019. 2. 13, 2020. 10. 22.>
3. 총장은 필요시에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③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학과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개정 2012. 7. 30, 2013. 3. 15, 2016. 11. 4, 2018. 1. 19, 2019. 2. 13.>

④ 교외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학과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또한, 총장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2. 7. 30, 2013. 3. 15, 2016. 11. 4, 2018. 1. 19, 2019. 2. 13.>

제5조(장학생 선발) ① 모든 장학생은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 단, 사회봉사, 특별 및 기타장학금 등 매년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의 변동이 없는 장학생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총장 결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2016. 11. 4, 2019. 2. 13, 2020. 10. 22.>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16. 11. 4.>]

② <삭제 2016. 11. 4.>[제5조제1항으로 이동 <2016. 11. 4.>]

③ 입학 성적장학생 선발 시 정원 내에서 선발하며, 학과별 선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15.>

④ 모든 장학생은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며, 후기졸업자 등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단,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후기졸업자의 경우에는 성적장학금을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07. 9. 1, 2020. 10. 22.>

⑤ <개정 2007. 9. 1.><삭제 2013. 3. 15.>

⑥ <삭제 2013. 3. 15.>

⑦ 동문자매장학생은 자매 또는 직계가족이 정규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였거나 현재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경우에 선발하며, 어느 한 명이 휴학 중이거나 후기졸업자인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단,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후기졸업자인 경우에는 선발한다. <개정 2007. 9. 1, 2018. 1. 19.>

⑧ <삭제 2013. 3. 15.>

⑨ 성적향상 장학생 선발 시 상위 20%와 하위 20%를 선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16. 11. 4.>

⑩ 행정 및 학과 교내근로(드리미)는 공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2020. 10. 22, 2022. 7. 8.>

⑪ <삭제 2013. 3. 15.>

⑫ <개정 2013. 3. 15.><삭제 2016. 11. 4.>

제6조(장학금액 및 수혜기간) 교내장학금 별 지급 성격 및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신입생의 경우 전체수석자에 한하여 입학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15, 2016. 11. 4, 2022. 7. 8.>

제7조(동점자 처리) ① <삭제 2013. 3. 15.>

② 신입생 성적장학생 선발 시 동점자는 입학전형 시 적용된 석차에 따른다. <개정 2013. 3. 15.>

③ 재학생 성적장학생 선발 시 해당학기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장학생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해당학기 백분위가 높은 자
2. 해당학기 백분위가 동점인 경우, 해당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
3. 해당학기 취득학점이 동점인 경우, 해당학기 수강한 과목 수가 많은 자
4. 해당학기 수강한 과목 수가 동일한 경우,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여 선발

<신설 2016. 11. 4.>

제8조(장학금 지급) ① 교내·외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에게 지급되며, 학생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연수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② 해당학기 선감면 대상자의 경우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③ <개정 2016. 11. 4.><삭제 2018. 1. 31.>

④ 장학대상자 중 등록금미납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담당부서에 등록대체 또는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3. 15, 2016. 11. 4, 2018. 1. 19.>

⑤ 장학금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장학금, 산업체특별장학금, 전공심화장학금, 성인학습자전담과정장학금 :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개강 후 8주차)에 지급한다. <개정 2013. 3. 15, 2022. 7. 8.>
2. 공로장학금 : 공로지급평가를 거쳐 방학 중 5~8주차에 지급한다. <개정 2013. 3. 15, 2016. 11. 4.>
3. <삭제 2019. 2. 13.>
4. 기타 및 특별장학금, 학비감면 : 선발이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07. 3. 1, 2013. 3. 15.>
5.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입금을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 1. 19.>
6. 기타 필요시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⑥ <삭제 2013. 3. 15.>

제9조(장학증서) 다음 각 호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교내장학 : 성적장학생, 산업체특별장학생, 전공심화장학생, 성인학습자전담과정장학생 <개정 2013. 3. 15, 2016. 11. 4, 2022. 7. 8.>
2. 교외장학 : 교외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대학에 기부 및 위탁한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교부하고,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3. 3. 15, 2016. 11. 4, 2018. 1. 19.>

제10조(장학생 전산등록 및 자료관리) ① 선발된 모든 장학생은 교내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 3. 15.>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의 날인을 받고,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16. 11. 4.>

제11조(장학생 교체) ① 기 선발된 교내장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 교체를 불허한다. 단, 드리미 장학생 등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변동 및 활동미비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학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2018. 1. 19, 2018. 1. 31, 2019. 2. 13.>

② <삭제 2016. 11. 4.>

③ 교외장학생의 경우에는 각 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 11. 4.>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규정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1항의2호 정원외 전형 신입생의 성적장학금 예산 배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 대학 교내장학금 종류 및 수혜자격 <장학규정에서 이관 2016. 11. 4.>
<개정 2019. 2. 13, 2020. 10. 22, 2022. 7. 8, 2023. 5. 16.>

구분	장학금구분	장학금 종류	수 혜 자 격
교내장학금	(1)입학성적장학금	가.전체수석장학금	①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전체수석으로 입학한 자 ②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 ③ 단, 정규 수업년한 동안 학과석차 30% 이내를 유지한 자
		나. <삭제 2022. 7. 8.>	① <삭제 2022. 7. 8.> ② <삭제 2022. 7. 8.>
		다.입학성적우수장학금	①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학과별 우수자 ② 학과별 기준에 따라 선발 및 장학금 지급 ② 학과에서 지정한 장학금액
		라.최초합격자장학금	① 신입생 입학전형(정원내 전형)에서 최초합격한 자
	(2)성적장학금	가.과수석장학금	①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과에서 최고득점인 자 ② 직전 학기에 과락(F학점)된 교과목이 없는 자 ③ 학칙위반 및 징계사실이 없는 자 ④ 학과에서 지정한 금액
		나.과차석장학금	① 매학기 평균성적이 과수석자 다음 순위 학생 약간명 ② 전 학기에 과락(F학점)된 교과목이 없는 자 ③ 학칙위반 및 징계사실이 없는 자 ④ 학과에서 지정한 금액
		다.성적우수장학금	① 매학기 평균성적이 과차석 장학금 다음 순위 학생 약간명 ② 직전 학기에 과락(F학점)된 교과목이 없는 자 ③ 학칙위반 및 징계사실이 없는 자 ④ 학과에서 지정한 금액
	(3)복지장학금	가.복지장학금	① 정부 국가장학금 수혜요건을 갖춘 자 ②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자격미달자 포함)
	(4)보훈장학금	가.보훈장학금	①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인자 중에서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단, 수업개시 3/4선 이전에 학비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5)공로장학금	가.공로장학금	① 해당 학기 성적이 기준 학점이상 이며 학생회 간부, 미디어센터 및 학교를 위해 봉사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특별공로장학금	①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총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다.홍보대사장학금	① 본 대학 홍보대사로 선발되어 성실하게 활동한 자
	(6)드리미장학금	가.드리미장학금	① 근면성실한 자로서 부서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7)계약학과장학금	가.계약학과장학금	① 본 대학이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다니는 자
	(8)전공심화과정장학금	가.전공심화장학금	① 본 대학이 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다니는 자
	(9)산업체특별장학금	가.산업체특별장학금	① 본 대학이 설치·운영하는 산업체위탁 교육과정을 다니는 자

구분	장학금구분	장학금 종류	수 혜 자 격
교내장학금	(10)사회봉사장학금	가.사회봉사장학금	① 직전 학기 봉사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신청자 중 선발
	(11)건강플러스장학금	가.건강플러스장학금	①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공한 자 ② 체지방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공한 자
	(12) <삭제 2018. 1. 31.>	가. <삭제 2018. 1. 31.>	① <삭제 2018. 1. 31.>
	(13) <삭제 2018. 1. 31.>	가. <삭제 2018. 1. 31.>	① <삭제 2018. 1. 31.>
	(14) <삭제 2018. 1. 31.>	가. <삭제 2018. 1. 31.>	① <삭제 2018. 1. 31.>
	(15)해외봉사장학금	가.해외봉사장학금	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해외봉사단원으로 신청하여 선발된 자
	(16) <삭제 2018. 1. 31.>	가. <삭제 2018. 1. 31.>	① <삭제 2018. 1. 31.>
	(17)마일리지장학금	가.마일리지장학금	① 취업기초, 사회봉사, 리더십, 전공심화 등 다양한 역량항목에 대한 마일리지 취득자
	(18)S-HRD특별장학금	가.S-HRD특별장학금	① 학과별 선발 기준에 따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19)외국인유학생장학금	가.외국인유학생장학금	①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적 또는 품행이 우수한 자
	(20)국고대응장학금	가.국고대응장학금	① 국가근로장학생 또는 장애학생도우미 장학금과 같이 국고대응으로 집행되는 장학금 선발 자
	(21)특별장학금	가.교직원자녀장학금	① 본 대학 교직원의 직계 자녀인 자
		나.동문가족장학금	①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가 본 대학에 동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다.재입학장학금	① 본 대학의 정규 졸업자가 재입학한 자(위탁생 및 시간제 등록생, 편입생 제외)
		라.총장특별장학금	① 가계곤란 학생을 포함하여 특별히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2)기타장학금	가.성적향상장학금	① 전전학기 성적이 학과석차 하위 20%인 자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로 향상되었을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단, 신입생은 제외되며, 재학생 정규학기 성적에 한함
		나.경진대회입상장학금	① 재학 중에 전국규모 및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경진대회(개인 및 단체)에서 상위 3위권에 입상하였을 경우 직전 학기 대회 실적을 매학기 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단체인 경우 학부에서 추천하는 1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다.체육특기자장학금	① 국가대표로 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재학기간 중에 국가 대표선수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라.희망플러스장학금	① 장애인 등록증 1~6등급의 장애학생
		마.사랑플러스장학금	① 다문화가정 출신 재학생
		바. 성인학습자전담과정 특별 장학금 <신설 2023. 5. 16.>	① 학과별 선발기준에 대한 학생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3)기금조성에 의한 장학금	남혜현장학금 / 박옥희장학금 / 나이팅게일장학금	기금조성 취지에 부합하여 추천된 자 <신설 2019. 2. 13.>
	(24)옴브즈걸장학금	옴브즈걸장학금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옴브즈걸에 선발되어 활동한 자 <신설 2019. 2. 13.>
	(25)성인학습자전담과정장학금	성인학습자전담과정장학금	본 대학이 운영하는 성인학습자전담과정을 다니는 자

【별표 2】 교내장학금 별 지급 성격 및 세부 기준 <개정 2016. 11. 4, 2019. 2. 13, 2020. 10. 22, 2022. 7. 8, 2023. 5. 16.>

장학 성격구분	장학금 구분	장학금 종류	성적	장학금액	수혜 기간	인원한도	비고
등록금 지원성 장학 (해당 장학금의 경우 학기 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입학성적장학금	전체수석장학금	입학전형 전체수석	등록금 전액	졸업시까지	1명	학과석차 30% 이내 유지시
		<삭제 2022. 7. 8.>	<삭제 2022. 7. 8.>	<삭제 2022. 7. 8.>	<삭제 2022. 7. 8.>	<삭제 2022. 7. 8.>	<삭제 2022. 7. 8.>
		입학성적우수장학금	학과별 성적우수	학과별 지급기준	한학기	학과별 지급기준	
		최초합격자장학금	최초합격자	위원회 결정	한학기	위원회 결정	
	성적장학금	과수석장학금	학과별 1등	학과별 지급기준	한학기	학과별 지급기준	
		과차석장학금	석차순	학과별 지급기준	한학기	학과별 지급기준	
		성적우수장학금	석차순	학과별 지급기준	한학기	학과별 지급기준	
	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	위원회 결정 <개정 2018. 1. 31.>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개정 2018. 1. 31.>	한학기	위원회 결정 <개정 2018. 1. 31.>	<삭제 2018. 1. 31.>
	보훈장학금	보훈장학금	실점수 70 이상	등록금의 50%	졸업시까지	보훈지청 선발기준 충족자	
	산업체특별장학금	산업체특별장학금	관계없음	수업료 30%	재학연한	학과 재학인원에 따라 상이	
	계약학과장학금	계약학과장학금	관계없음	위원회 결정	재학연한	학과 재학인원에 따라 상이	
	전공심화과정장학금	전공심화장학금	관계없음	수업료 30%	재학연한	학과 재학인원에 따라 상이	최종등록 인원에 따라 수업료의 30% 이내에서 조정 가능
	성인학습자전담과정 장학금	성인학습자전담과정 장학금	관계없음	수업료 30%	재학연한	학과 재학인원에 따라 상이	
	사회봉사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관계없음	500,000원	한 학기	학과 재학인원에 따라 상이 <개정 2023. 5. 16.>	
	특별장학금	교직원자녀장학금	관계없음	등록금 전액	졸업시까지 (신청 시)	해당학기 신청학생	
		동문가족장학금	관계없음	400,000원	졸업시까지 (신청 시)	해당학기 신청학생	재학 중인 자에게 모두 지급
		재입학장학금	관계없음	500,000원	한학기	해당학기 신청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해 지급
		총장특별장학금	관계없음	위원회 결정	발생시	발생시	

장학 성격구분	종류	구분	성적	장학금액	수혜 기간	인원한도	비고
등록금 지원성 장학	기타장학금	성적향상 장학금	별표 제1호 선발기준에 따름	200,000원	한학기	해당학기 신청학생	
		경진대회입상 장학금	관계없음	200,000원	한학기	해당학기 신청학생	
		체육특기자 장학금	관계없음	등록금 전액	한학기	해당학기 신청학생	
		희망플러스 장학금	관계없음	1-3급 600,000원 4-6급 300,000원	졸업시까지 (신청 시)	해당학기 신청학생	
		사랑플러스 장학금	관계없음	500,000원	졸업시까지 (신청 시)	해당학기 신청학생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별 장학금 <신설 2023. 5. 16.>	위원회 결정	위원회 결정	재학연한	위원회 결정	
대가성 장학 (해당 장학금의 경우 학생 노력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外 지급 처리)	공로장학금	공로장학금	2.7 이상~3.0 미만, 3.0 이상~3.2 미만, 3.2 이상	해당년도 예산에 따라 위원회 결정	한학기	위원회 결정	
	마일리지 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관계없음	마일리지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한학기	해당학기 신청학생	
	S-HRD특별 장학금	S-HRD특별 장학금	관계없음	각 학과별 선발기준	한학기	각 학과별 선발기준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1.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1.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1.31.>	<삭제 2018. 1. 31.>	
	해외봉사 장학금	해외봉사 장학금	한국대학사회 봉사협의회 규정에 따름	참가비 1/2	한학기	한국대학사회 봉사협의회 규정에 따름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 1. 31.>	<삭제 2018.1.31.>	<삭제 2018. 1. 31.>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위원회 결정	위원회 결정	한학기	위원회 결정	
	국가교육근로 대응장학금	국가근로 국고대응	장학재단 집행 규정에 따름	장학재단 집행 규정에 따름	한학기	해당학기 선발학생	
	건강플러스장학금	관계없음	관계없음	각 200,000원	한학기	해당학기 선발학생	
	드리미장학금	드리미 장학금	관계없음	당해연도 최저임금기준*근로시간	학기/ 방학중	해당학기 선발학생	
	옴브즈걸장학금	옴브즈걸장학금	관계없음	300,000원	한학기	해당학기 선발학생	
기금조성에 의한 장학금	남혜현장학금 / 박옥희장학금 / 나이팅게일장학금		기금조성자의 취지에 따라 학과에서 정함	기금이자발생액에 따라 결정	한학기	학과추천	기금조성 취지에 따라 학과에서 정함

【별지 제1호서식】 사회봉사 장학금 신청서 <개정 2022. 7. 8.>

학년도 학기 사회봉사 장학금 신청서

<table>
<tr><td>학 과</td><td colspan="2"></td><td>학 번</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연 락 처</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계좌번호</td><td>은행명</td><td></td><td>계좌번호</td><td></td><td>※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첨부</td></tr>
<tr><td>봉사점수</td><td colspan="2"></td><td>저소득층 점수</td><td></td><td>총점 ( )</td></tr>
<tr><td rowspan="2">직전 학기 봉사내역</td><td>봉사기관명</td><td colspan="2"></td><td>봉사시간</td><td>시간</td></tr>
<tr><td>주요봉사 내용</td><td colspan="4">※봉사 증빙 서류 첨부</td></tr>
<tr><td rowspan="6">저소득층</td><td>국민기초 생활수급자</td><td colspan="2">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차상위계층 유형</td><td colspan="2">한부모가정증명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확인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자활근로자확인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해당자에 한하여 해당칸에 √ 표시 하시고 증빙서류 첨부</td></tr>
<tr><td>지도 교수 추천서</td><td colspan="5">지도교수 : (인)</td></tr>
<tr><td colspan="6">본인은 학년도 학기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봉사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학 과 장 : (인)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 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특별 및 기타 장학금 신청서 <개정 2022. 7. 8.>

학년도 학기 특별 및 기타 장학금 신청서

신청학생 인적사항	학 과			학 번	
	성 명			연 락 처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장학금 신청

장학금명	수혜자격	장학금액	제출서류	장학금신청 (신청장학금에 V 체크)
교직원자녀 장학금	본 대학 교직원의 직계자녀	등록금 전액	주민등록등본(가족 관계 확인)	( )
동문가족 장학금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가 본 대학에 함께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자매가 각각 400,000원 수령 받으므로 각각 신청바람)	400,000원	주민등록등본(가족 관계 확인)	( )
재입학 장학금	본 대학의 정규 졸업자가 재입학한 자 (산업체위탁생 및 시간제 등록생, 편입생 제외)	500,000원	졸업증명서 (본 대학 졸업여부 확인용)	( )
성적향상 장학금	전전학기 성적 학과석차 하위 20%에서 직전 학기 성적 상위 20%로 향상된 경우	200,000원	성적증명서(학기석차 기재)	( )
경진대회 입상장학금	직전 학기 재학 중 전국규모 경진대회에서 상위 3위권 이내 입상자. 다만, 단체입상인 경우 1인만 신청	200,000원	대회참가확인증 또는 공문 사본 상장 사본 (학과의 원본 대조필 날인)	( )
체육특기자 장학금	협회에 등록된 국가대표로 재학기간 중 그 자격을 유지한 경우	등록금 전액	국가대표선수 확인증	( )
희망플러스 장학금	장애등급 1~6등급의 장애학생	1~3급 600,000원 4~6급 300,000원	장애인등록증 사본	( )
사랑플러스 장학금	다문화가정 출신 재학생	500,000원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과 추천확인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학 과 장 : (인)

신 청 시 유의사항

1. 본인명의 통장사본에 학번을 기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3.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제외
4. 이전에 동일 장학금 계속 수혜자의 경우에도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탈락

【별지 제3호서식】 교내근로(드리미) 장학금 신청서 <개정 2020. 10. 22, 2022. 7. 8.>

학년도 학기 교내근로(드리미) 장학금 신청서

근로학생 인적사항	학 과			학 번	
	성 명			연 락 처	
	주 소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첨부
근무지	근무부서			학과	
장학금 신청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서 및 학과	위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학 과 장 : (인) 부 서 장 : (인)				
신 청 시 유의사항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통장사본에 학번을 기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